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- 11호

「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」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17일

###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·재정적 협력체계를 구

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함(안 제3조).

- 나.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대전광역시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정함(안 제4조).
- 다. 대전광역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(안 제5조).

#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복지환경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27, FAX 042-270-5039, E-mail : ychml1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# 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###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중·고등학교를 말한다.
  - 2. "교복"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.
  - 3. "교복구입비"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대전광역 시교육감과 행정적·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대상) ①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
  - 2.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제5조(교복 지원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

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,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6조(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  - 1.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  - 2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 령

### □ 교육기본법

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 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・실시하여야 한다.

## □ 초·중등교육법

**제2조(학교의 종류)**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- 1. 초등학교 · 공민학교
- 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4. 특수학교
- 5. 각종학교

# 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

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"보조사업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교의 급식시설 · 설비사업

- 2.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- 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- 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- 5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- 6.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

## 비용추계서

- 1. 의안명: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
- 2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  - 제5조(교복 지원)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- 3. 비용 추계결과
  - 가. 추계의 전제
  - 중·고 신입생 교복구입비(금액: 300,000원 이내) 전체(100%) 지원
  - 중장기 배치 계획에 따른 학생 수(신입생) 적용

< 교육통계 2018.11.30.기준 >

(단위 : 명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합계	28,420	29,080	26,810	26,500	28,410	139,220
중학생	13,520	14,710	13,790	12,980	13,700	68,700
고등학생	14,900	14,370	13,020	13,520	14,710	70,520

- 나. 추계 결과 : 총 41,766백만원
- 다. 연도별 비용추계표(별첨)
- 라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50%, 교육청비 50%
- 4.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: 없음
- 5. 작성자: 교육복지청소년과 행정 6급 김선희

#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,	네 입	-	-	-	-	-	_
ر	세 출	4,263,000	4,362,000	4,021,500	3,975,000	4,261,500	20,883,000
	재원 조달	8,526,000	8,724,000	8,043,000	7,950,000	8,523,000	41,766,000
의	소 계						
존	보조금						
재	지방교부세						
원							
자	소 계	4,263,000	4,362,000	4,021,500	3,975,000	4,261,500	20,883,000
체	지방세	4,263,000	4,362,000	4,021,500	3,975,000	4,261,500	20,883,000
수	세외수입						
입 							
	지방채						
	기 금						
	공기업 특별회계						
(채무	기 타 '부담, 민자 등)	4,263,000	4,362,000	4,021,500	3,975,000	4,261,500	20,883,000

## 【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】

# 발 의 의 원 명 단

연번	의 원 명	서 명	비고
1	0. 考支	2400	
2	2 3 3	file.	
3	XYA	100	
4	8 50	SIN	
5	ZH 791 - A	Fan	
6	1.10	1000	
7		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
16			
17			